

TIPLONews 한국어본

2022 년 1 월호(K269)

K220103Y1

01 지혜재산국이 2022 년 1 월 1 일부터 「녹색특허 채널제도 도입」

대만 지혜재산국¹⁾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녹색 특허²⁾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품화 프로세스를 가속화하기 위해 2022 년 1 월 1 일부터 새롭게 수정된 녹색특허 채널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지혜재산국은 2014 년 1 월 1 일에 「발명특허 조기심사 프로그램」(이하 AEP)³⁾에서 「특허 출원에 관련된 발명이 녹색 에너지 기술에 관련되는 것」이라는 신청 사유 (이하 사유 4)를 추가했으며 2021 년 7 월 현재까지 225 건이 신청되었고 AEP 신청 건수 전체의 2.74%를 차지했다. 또 녹색 에너지 기술의 AEP 신청 건수 중 대만 국내로부터의 신청이 많아서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산업별로 보면 태양 에너지, LED, 리튬 전지가 상위 3 위를 차지하고 있다.

AEP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문장의 변경: AEP 에 있어서 「특허 출원에 관한 발명이 녹색 에너지 기술에 관련하는 것」을 「특허 출원에 관한 발명이 녹색 기술에 관련하는 것」으로 변경해, 녹색 에너지 기술에만 한정하지 않는다고 변경하였다.
2. 신청 적용범위 확대: 에너지 절약 기술 관련, 탈탄소 기술 및 자원 소모 절감 관련 등의 녹색 기술에 관련된 범위에 있으면 모두 AEP 를 신청할 수 있다.
3. 심사 시간의 단축: 「비즈니스의 실시예에 필요한 것」(사유 3) 및 「특허 출원에 관련된 발명이 녹색 기술에 관련하는 것」(사유 4)라고 하는 신청 사유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모두 제출 되고 나서 1 차 심사 통지까지의 기간이 원래 9 개월이었지만, 6 개월로 단축되었다. 일반적인 발명의 신청보다 심사 시간이 단축됨으로써, 출원인의 특허 체제

구축에 더욱 유리해졌다.

「2050 년 탄소중립」은 전 세계의 목표이며, 대만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인권 행동계획에서도「기후변화와 인권」 부문에서「최적의 녹색채널 프로그램 책정」이 중요 실적의 평가 지표로 삼고있다. 지혜재산국은 세계의 정세에 적응하는 것 외에 녹색 특허에 대하여 AEP 를 개정함으로써 녹색 기술의 혁신자가 자원의 투입과 연구 개발을 계속하도록 장려하고, 녹색 기술의 혁신을 통해, 환경의 지속적인 개선과 경제활력의 향상이라는 윈윈의 국면을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있다. (2022.01)

역주:

- 1) 대만 경제부 지혜재산국을 지칭하며 한국 특허청에 해당한다.
- 2) 녹색특허는 환경보호 관련 기술 특허를 지칭한다.
- 3) 발명특허 조기 심사 프로그램은 중국어 發明專利加速審查作業方案, 영어명 Accelerated Examination Program(AEP)를 번역한 것이다.

K211230Y1

02 2022 년 1 월 1 일부터 대만과 일본간 「디자인 출원의 우선권 서류에 대한 전자적 교환」 서비스 시작

대만 지혜재산국의 공고에 따르면 우선권 증명문서의 전자식 교환 ¹⁾(PDX) 서비스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PDX 시스템을 더욱 정비하려 노력하여 왔다. 이의 일환으로 대만 지혜재산국과 일본 특허청은 2019 년에 제휴 각서에 서명하였고, 디자인 특허를 PDX 의 적용 대상에 편입하는 것을 결정하였으며, 쌍방에서 시스템의 개발과 테스트를 실시해 왔다. 그 결과 쌍방의 접속 기능 설치를 무사히 마쳤고, 2022 년 1 월 1 일부터 대만과 일본간 디자인 특허 출원 PDX 서비스의 제공을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서비스를 통해 디자인 출원인은 종이매체의 서류를 발송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절약하고 해외로의 출원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게 되어 심사작업의 가속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지혜재산국에서는 향후 본 시스템을 출원인이 많이 이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2021.12)

역주:

- 1) 특허 우선권 증명 문서의 전자식 교환은 중국어 專利優先權證明文件電子交換, 영어명 Priority Document Exchange(PDX)를 지칭한다.

K211130Y8

K211130Z8

03 대만과 한국, 「조세 이중과세 방지협정」에 서명

대만과 한국과의 사이에 「조세에 대한 이중과세 방지 및 탈세 방지를 위한협정」(이하 대만과 한국간 조세 협정)이 2021년 11월 17일 각각의 장소에서 서명되었다. 쌍방은 국내법에 정한 절차를 마친 후 서면으로 발효를 서로 통지하였고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시작키로 하였다.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과 한국은 경제무역의 왕래가 밀접하고 2020년의 대만 한국간 무역총액은 미화 357억 4070만 달러에 달했으며, 대만과 한국은 각각 상대국이 다섯 번째 규모의 무역 파트너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2021년 7월말 현재 대만 기업이 한국내 투자한 총액은 미화 20.41억 달러, 한국 기업이 대만내 투자한 총액은 미화 15.06억 달러로 집계되고 있다. 대만과 한국간 조세 협정이 제공하는 적절한 조세 감면 조치에 의해, 이중 과세는 해소되고 더 나아가 조세 부담의 경감으로 연결되어, 쌍방간 기업의 제휴나 기술 교류에도 유리해져서, 쌍방 기업 경쟁력을 높여, 취업 기회를 창출하고, 쌍방의 경제성장을 촉진하기에, 호혜적인 윈윈의 국면을 열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대만과 한국간 조세 협정은 대만과 동아시아 국가들이 서명한 조세 협정으로는 일본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이 협정의 발효에 의해 대만은 동아시아에서의 조세협정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게되어 향후 다른 나라와의 조세협정에 관한 협상이나 국제경쟁력의 향상함에 있어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2021.11)

K211221Y9

04 「바이오신약 산업 발전조례」개정안이 대만 입법원을 통과, 바이오 의약품산업 발전 토대 강화

대만 입법원에서는 2021년 12월 21일에 「바이오 신약 산업발전 조례」 개정안이 3독¹⁾을 통과하였고 명칭을 「바이오 의약품 산업발전 조례」로 변경했다.

「바이오 신약 산업발전 조례」는 2007년 7월 4일에 공포 시행되어 조세우대 등의 조치를 통해 대만의 바이오 의약품 산업에 혁신가능토록 활력을 쏟아 부었고 가치가 높은 바이오 의약품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상품이 해외에 출시되었고 대만 신약 개발과 고위험 의료기기의 해외 진출을 도왔다. 이번 개정의 중점은 다음과 같다.

1. 시행 기한을 2031년 12월 31일로 연장.
2. 바이오 제약 산업 발전 규정의 장려 적용 범위의 확대: 동 조례의 장려 적용 범위에는 원래의 「신약」과 「고위험 의료기기」 이외에 「신제형 제제」, 「재생 의료」, 「정밀 의학」, 「디지털 바이오」, 「바이오 의약품 산업 전용의 혁신 기술 플랫폼」등이 추가되어 또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 의약품 수탁 개발 생산(CDMO)²⁾ 업무에 종사하는 것도 포함된 것 외에 「신형 바이오 의약품」이 「기타 전략적 바이오 의약품」으로 변경되었다.
3.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를 개정: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 의한 연구개발에 대하여 투자액의 25%를 한도로 하여 당년도부터 5년 이내의 각 연도의 영리사업 소득세로부터 공제한다.
4.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의 세액공제규정을 신설: 바이오 의약품 기업이 생산을 위하여 투자한 새로운 기계, 설비 또는 시스템의 투자액에

대해서 1 년도 지출이 대만화폐 1000 만원 이상, 10 억원이하의 범위에 도달한 경우 투자액의 5%를 한도로 하여 당년도 영리사업 소득세에서 공제하거나 투자액의 3%를 한도로 당년도보다 3 년 이내의 각 연도의 영리사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매년 공제액은 당년도 영리사업 소득세의 3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5. 법인주주에 의한 투자세액 공제 개정: 영리사업자가 바이오 의약품 기업의 현금증자에 참여한 경우, 그런 주체가 지불한 주가의 20%를 한도로 하여 영리사업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매년 공제액은 당년도 영리사업 소득세의 5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영리사업의 투자처인 CDMO 의 바이오 의약품기업은 비상장기업, 장외주식 상장기업 또는 설립등기일로부터 10 년 미만의 상장기업, 장외주식 상장기업에 한한다.
6. 개인주주에 의한 투자의 세액공제규정을 신설: 개인주주에 의한 비상장 또는 장외 바이오 의약품 기업에 대한 현금투자에 대해서는 해당 바이오 의약품기업에 대한 당년도의 투자액이 대만화폐 100 만원 이상이고 보유기간이 만 3 년인 경우 투자 금액의 50%를 한도로 하여 당년도보다 2 년 이내의 각 연도의 개인종합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있으며, 매년 공제액은 대만화폐 500 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7. 고위 전문직과 기술 투자자가 취득한 주식에 과세를 낮추도록 개정: 바이오 의약품기업의 고위 전문직 종사자가 보수로 취득한 주식 및 기술투자자가 기술제공의 대가로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근속 또는 기술제공의 기간이 2 년에 이르는 경우 「양도가격」과 「주식취득시의 시가 또는 가격」 중 낮은 쪽을 선택하여 과세할 수 있다.

「바이오 의약품 산업발전 조례」가 입법부 제 3 독을 통과한 것은 대만 바이오 의약품 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에 도달했음을 나타낸다. 향후 해당 산업에 성장을 위한 새로운 활력이 쏟아져 선진의료 및 다른 분야와의 연계가 장려됨과 동시에 높은 기술 수준의 상품이 개발되고 연구개발과 제조의 양립도 진행되어 민간으로부터의 투자가 모여 인재 확보의 유인이 강화될 것이 기대되고 있다. (2021.12)

역주:

- 1) 보통 법안은 입법부에서 3 독(三讀) 후에 법안은 공식적으로 통과되고 여러 행정 절차를 거쳐 발효된다.
- 2) CDMO 는 Contract Development and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의 약자로 의약품 수탁 개발 생산을 뜻한다.